

# 중국 강제 인증 제도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제3편 해외인증시리즈  
수출시 CCC 마크 부착 필수

RDAS 기술지원센터 원장 안희준  
(02)544-9033 rdas114@hanmail.net

중국의 제품인증제도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내수제품은 1984년, 전기제품인증위원회(CSBTS), CCEE 전기제품안전인증제도 RDAS 기술지원센터 안희준 원장 108개 제품이고, 수출입 제품 검역국(CIQ), CCIB 수출입제품 안전품질허가증제도 47분류의 104종 제품에서 내수제품, 수출입제품은 2003년 8월 1일부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CNCA), CCC(중국강제인증)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 19종류 132개 제품이다.

CCC인증 감독 승인 기구는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의 국가 강제성 제품인증의 규칙과 제도 제정, 심사, 비준 및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중국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CNCA)는 인증기구, 시험기구, 심사기구 및 인증마크 승인기구를 지정한다.

이 인증서는 획득한 제품 및 기업 명단 발표, 각 지역의 검사 행정부문을 지정하여 강제성 제품 인증에 대한 위법 행위 검사 업무수행, 특수용도의 제품은 심사하여 강제성 인증을 면제한다.

강제성 제품인증의 투고, 제소를 받은 중대한 위

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각 지역의 품질 기술 감독기구와 지방세관 검사 검역기구는 CNCA의 지도에 따라서 각 지역 "품질 심사 행정부분과 이하의 심사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관할지역에서의 제품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사후감독 중점내용은 인증을 획득하지 않거나 마크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은 마크를 위조한 제품 혹은 소비자의 고발을 받은 제품은 목록 내 제품 중에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지역 내 반입 금지된다

그리고 강제성 제품인증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업무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시찰하고, 강제성 제품 인증을 위반한 제품의 생산과 유통업체, 수입상에 대하여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 규정>에 따라 벌칙 처리한다.

사후심사와 감독 과정에서 발생된 인증기구, 시험기구, 심사기구와 인증인원의 위법 상황 혹은 위법행위에 대해 CNCA에 보고가 되면, CNCA에서 전권을 가지고 책임조사 처리한다.

각 지역 품질 검사 행정부분과 협력한다.

별다른 CNCA에 위탁을 받은 상용된 정밀품질검사 행정부에서 시행한다.

실시기구의 지정된 인증기구 (중국전량인증중심)은

첫째, CNCA에서 지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제품 인증절차 규칙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행한다.

셋째,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하여 사후 심사를 진행한다.

넷째, 인증과 관련된 부고, 제조업무를 담당한다.

다섯째, 법에 의거 인증서의 사용금지, 무효, 취소할 수 있다. 인증기구의 지사 및 협약을 맺은 심사기구 및 시험기구의 업무를 심사 감독한다.

지정된 시험기구는 CNCA에서 지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제품인증 절차 규칙에 따라 시험을 시행한다. 지정된 인증기구와 시험기구는 시험업무를 시행하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일정한 권한 내에서 사용된 시험결과를 책임진다.

CCC 강제인증은 중국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CNCA)에서는 2002년 제8호 공고를 통해 강제성 제품 인증제도의 신속한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생산, 수입 및 경영활동 중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아래의 제품 범위 내에서는 강제성 인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거나 혹은 면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강제성 인증이 필요하지 않는 제품 범위는 주종대사관, 영사관 및 관련기구 근무자들의 개인 사무용품, 정부간의 원조물품, 전시품 (전시 판매로 연결된 경우 제외), 특수용도 (군사 등 목적)의 제품이다.

둘째, CCC 인증이 면제 확인서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는 과학연구 및 테스트를 위한 제품, 원성품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부품, 외주 합작에 단기하여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제품, 핵심기술 도입을 위한 생산라인 사용에 필요한 부품, 소량제품을 기업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경우, A/S 부품 등 기타 특수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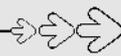
CCC 승인/확인(Certificate of Conformity)의 효과는 CCC 시험항목 및 시험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CB 부분 인증, CB 인증유효기간: 3년 이내, CB 인증시장 모델명, 규격, 제조상과 제조공장이 CCC 신청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샘플발송 : 1. PCS, IIC 규격과 CB 규격상 차이가 있을 경우, 차이점에 한하여 모증시험 진행되었다.

중국강제인증제도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의 제1편 CCC 인증제도의 공표, 배정 및 원칙, CCC 인증제도의 법률 및 규칙, 조직기구 정부부처, CCC 인증제도의 법률 및 규칙, 조직기구 정부 부처, CCC 인증제도의 관리 및 실시, CCC 인증제도의 기본요구.

제2편 CCC 인증제도의 공장심사요구사항, CCC 심사 시 설문지, CCC 공장심사 CHECK 사항 (예)에 대해서 설명.

제3편 CCC 중국 제품인증제도의 발전역사, CCC인증 감독 및 승인 기구, CCC인증 면제 제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끝나고 다음 편에서는 CE 인증 마크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전기전자제품 강제성 인증 제도실시대상제품 (GB 규격)

실시규칙	대상제품	GB규격
CNCA-01C-001	<전기전자제품 강제인증 시행규칙> 전선 및 케이블 제품 - 전선부품	GB15934-1996
CNCA-01C-002	<전기전자제품 강제인증 시행규칙> 전선 및 케이블 제품 - 전선 케이블	GB12972/GB 12528.1/ GB 5013/GB 5023
CNCA-01C-003	<전기전자제품 강제인증 시행규칙> 회로스위치, 기기보호 및 접속기 -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플러그 및 리셉터를	GB2099.1-1996/GB2099.2-1997/ GB1002-1996/GB1003-1996
CNCA-01C-004	<전기전자제품 강제인증 시행규칙> 회로스위치, 기기보호 및 접속기 - 가정용 및 유사용도 의 고정식 전기장치 스위치	GB16915.1-1997
CNCA-01C-005	<전기전자제품 강제인증 시행규칙> 회로스위치, 기기보호 및 접속기 - 공업용 플러그 리셉 터를 및 결합기	GB11918-89/GB11919-89
CNCA-01C-006	<전기전자제품 강제인증 시행규칙> 회로스위치, 기기보호 및 접속기 - 가정용 및 유사용도 의 기구 또는 결합기	GB17465.1-1998/GB17465.2-1998
CNCA-01C-007	<전기전자제품 강제인증 시행규칙> 회로스위치, 기기보호 및 접속기 - 열용단체	GB9816-98
CNCA-01C-008	<전기전자제품 강제인증 시행규칙> 회로스위치, 기기보호 및 접속기 - 가정용 및 유사 용도 의 고정식 전기장치 부속 외장품	GB17466-1998
CNCA-01C-009	<전기전자제품 강제인증 시행규칙> 회로스위치, 기기보호 및 접속기 - 소형관형 퓨즈	GB9364.1-1997/GB9364.2-1997 /GB9364.3-1997
CNCA-01C-010	<전기전자제품 강제인증 시행규칙> 저압전기-저압스위치장치	실시규칙 참고
CNCA-01C-011	<전기전자제품 강제인증 시행규칙> 저압전기-스위치 및 제어장치	GB14048.2-94/GB14048.3-93/ GB14048.4-93/GB14048.5-93/ GB14048.6-1998/GB14048.9-1998/ GB14048.10-1999/GB17701-1999/ GB17885-1999
CNCA-01C-012	<전기전자제품 강제인증 시행규칙> 저압전기 - 기계보호 장비	GB16916.1-97/GB16916.21-97/ GB16916.22-97/GB16917.1-97/ GB16917.21-97/GB16917.22-97/ GB6829-95/GB8755-95/GB8756-98/GB10963- 1-1999/GB13539.1-92/GB13539.2- 92/GB13539.1-92 and so on
CNCA-01C-013	<전기전자제품 강제인증 시행규칙> 소출력 모터	GB12360-2000
CNCA-01C-014	<전기전자제품 강제인증 시행규칙> 전동 공구	GB3883/GB4343 - 1995/ GB17625.1 - 1998
CNCA-01C-015	<전기전자제품 강제인증 시행규칙> 전기 용접기	실시규칙 참고



유/관/기/관/칼/럼

CNCA-01C-021	<전기전자제품 강제인증 시행규칙> 정보통신 설비 - 금융 및 무역거래 결제용 전자기기	GB9254
CNCA-01C-022	<전기전자제품 강제인증 시행규칙> 광원응용기구 전기장치	GB7000.1-1996/GB7000.10-1999 / GB7000.11-1999/GB7000.11-1999/ GB7000.12-1999/GR23: 3-1993/ GB15143-1994/GB14045-1993/ GB17743-1999/GB17625.1-1998

▶ 다음편에 계속